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KOREAN COUNCIL FOR WOMEN DRAFTED FOR SEXUAL SLAVERY BY JAPAN

서울특별시 중로구 안국동 136-46 기동교 5층 802호, 171-171
전화 763-9633 FAX 763-9634

일본정부의 강제종군위안부 문제 2차 진상조사 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

1. 전체적 논평

가) 전쟁범죄라는 본질을 회피한 발표로서 법적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발견할 수 없다. 교묘하게 빠져나가면서 책임을 안지는 선에서 부분적 인정을 하고 있을 뿐이다.

나) 가장 쟁점이 되었던 강제성에 대해서는 예상했던 선 이하에도 못 미치는 매우 미약한 부분적 인정이다. 지난 7월 말의 일본정부의 피해자 증언청취는 우리의 예상대로 일본정부의 졸속 진상발표에 이용되었을 뿐으로,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다) 미야자와 정권 하에서 이 문제를 매듭지으려고 서둘러 진상조사 보고를 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정도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정부 역시 강력한 진상규명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2. 일본 발표에 대한 구체적 문제점

가) 위안부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성격이 빠져 있다 :

위안부는 당시 공창제도 하의 일본 매춘여성과 달리 국가 공권력에 의해 강제로 군대에서 성적 위안을 강요당한 성노예였다. 지금까지 일본 내에서는 강제종군 위안부를 매춘으로 인정하려는 시각이 존재해 왔고, 지금까지도 일본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들에 의해 그러한 생각이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매우 핵심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갑자기 '소위 종군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저의가 무엇인지? 또한 일본 매춘여성 위안부들을 같은 범주에 넣고 있으며(4쪽), 위안소 설치 경위에서도 위안부의 성격 규정이 빠져 있는 것은 문제 본질을 회피하려는 저의이다.

또한 어린 나이의 미혼여성들이 집중적으로 위안부가 되었으며, '탄환'으로 분류되어 기록에 남는 식의 군수물자로 취급한 사실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나) 위안소 존재했던 지역에서 조선(당시)과 대만이 빠져 있다 :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부산, 목포, 제주등에도 위안소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조선(또는 남북한)이 빠져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혹시 당시 조선이나 대만이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빠뜨린 것이라면, 이 문제에 입하는 일본 정부의 성실성과 우리에게 대한 경시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다) 위안부의 총수 :

'위안부의 총수를 나타내는 자료나 추측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고 말했는데 매우 불성실한 태도이다. 정확한 수는 아니더라도, 당시 위안소의 수, 군인 수, 또한 최근에 발견된 연 3천여만개의 콘돔 지급수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추정치는 만들 수 있다.

라) 위안부의 출신지 : '천지에 이송된 위안부의 출신지로서는 일본인을 제외하면 한반도 출신자가 많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인 여성은 성노예적 성격의 강제 종군위안부와는 그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 일본위안부는 당시 일본의 공창제 아래에서 위안부가 되었고, 돈을 받았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이 끝나면 위안부 생활을 그만둘 수 있었다. 일본인 위안부를 은근 슬쩍 이 보고에 집어 넣은 것은 강제종군위안부의 성격을 흐리기 위함으로 보인다.

마) 위안부의 모집에서의 강제성(7쪽)이 매우 모호하게 부분적으로 인정되었다. 가장 쟁점이 되었던 점에 비하여 너무나 성의가 없다. "위안부 모집에 관해서는 군 당국의 요청을 받은 경영자의 의뢰에 의해 일선업자들이 한 것이 많다. . . . 업자들이 감언을 하거나 공포감을 주는 등의 형태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케이스가 많고"에서 강제모집의 주체가 민간업자인 것으로 발표하였다. 군과 관의 관여에 대해서는 "관헌들이 직접 가담하는 등의 케이스도 발견되었다" 정도로 인정하였다. 1939년 이후부터는 민간업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군, 관이 모집에 나섰으며, 1940년 이후부터는 "국민총력조선연맹"이라는 기관을 통하여 군, 관, 민이 공동으로 적극적으로 강제모집에 나섰다는 명백한 자료가 있다. 민간업자야말로 군관의 강제모집을 지원했을 뿐이다.

바) 위안부의 수송(5쪽) : "폐주의 혼란상황 하에서 현지에서 두고 떠난 사례도 있었다"라고 발표하였는데, 현지에서 방기하고 떠난 사례가 대부분이다. 또한 패전 이후 집단몰살 시킨 비인도적 사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사) 명령체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 이 문제는 사상 유례 없는 "중대한 인도에 반한 죄" 등 전쟁범죄에 해당된다. 그리고 일본 군 수뇌부가 직접 기획, 명령, 경영에 참여하였다. 이 러한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

3. 앞으로의 대책과 요구

가) 미야자와 정권 하에서 줄속적으로 마무리 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일본 새정부는 전후 일본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해야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이 일에 진지하게 임해주기를 바란다. 진상조사를 위해서 일본정부와 국회는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3차 보고서를 제출하기를 바란다.

나) 한국정부는 진상규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만큼, 위와 같은 문제점이 많은 보고내용을 지적하고 강력하게 진상규명을 요구할 것이며, 일본의 법적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다) 정대협의 대책활동

가)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과 진상규명을 요구하기 위하여, 현재 1993년 8월 1일 부터- 25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인권 소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법을 근거로 진상조사와 배상,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것이다.

나) 정대협 차원에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강만길 교수 중심으로 연구 조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벌여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양심적인 학자들과 정보를 교류할 것이다.

다) 일본 검찰에게 곧 책임자 처벌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다.

라) 우리의 7대과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며, 이의 달성을 위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다.

1993년 8월 4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이효재

윤정옥

김희원